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의안번호	〃
------	---

제출연월일 : 2002. 11.

제출자 : 평창군수

1. 제정이유

지역경제에 관심이 있는 주민,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평창군의 주요시책 및 현안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협의회서 협의·조정하는 사항 (안 제2조)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 군이 수립하는 중장기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 시, 군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지역경제관련 기관·사회단체와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 지역경제에 관하여 기관·사회단체의 건의 또는 요청이 있는 사항
- 기타 지역경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협의회 위원의 구성, 임기, 해촉 (안 제3조 내지 제5조)

다. 회의개최 및 의안의 제출, 안건의 배부 (안 제8조 내지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 라.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마. 신·구조문대비표 : 제정안으로 해당없음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주요시책 및 현안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평창군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2. 군이 수립하는 중장기경제사회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도, 시, 군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지역경제관련 기관·사회단체와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지역경제에 관하여 기관·사회단체의 견의 또는 요청이 있는 사항
6. 기타 지역경제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창군의회 의원
2. 경제관련 실과소장
3. 경제관련 기관·사회단체장
4.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제3항제1호내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사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 감사실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개최)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기회는 상·하 반기에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15일전에 관련기관·사회단체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통보받은 기관·사회단체 및 각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 할 의안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사회단체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및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당해 기관·사회단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창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